

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신금자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7월 13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2년 7월 17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55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gim72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금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2. 7. .

발 의 자 : 신금자, 이길호, 신경원,
김귀근, 이우천, 이훈미,
이동한, 박상현, 이혜승

1. 제안이유

- 군포시 내 노후주택의 교체가 어려운 수도관을 개량하고 수도관 성능을 향상시켜 군포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노후주택 정의 (안 제2조 11호)
- 나. 개량 정의 (안 제2조 12호)
- 다. 개량공사 정의 (안 제5조)

3. 관련법령

- 「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」

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“노후주택”이란 준공 후 20년이 경과 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.

12. “개량”이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 제거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, 갱생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총칭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종”을 “6종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개량공사 : 노후된 옥내급수 설비를 갱생·교체·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등 설치하거나 개량하는 공사

제41조의2제2항 중 “세척·갱생”을 “세척·갱생·개량”으로 하고, 같은 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세척·갱생”을 각각 “세척·갱생·개량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.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11. “노후주택”이란 준공 후 20 년이 경과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.
<신설>	12. “개량”이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 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 하는 갱생과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 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, 갱생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 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를 총칭한다.
제5조(급수공사의 구분)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.	제5조(급수공사의 구분) ----- ----- 6종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6. 개량공사 : 노후된 옥내급수 설비를 갱생·교체·수도관 성능

	<u>능 향상 장치 등 설치하거나 개량하는 공사</u>
제41조의2(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) ① (생 략)	제41조의2(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<u>세척·갱생</u>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, 시장은 급수관의 <u>세척·갱생</u>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세척·갱생·개량</u> ----- ----- <u>세척·갱생·개량</u> ----- -----.
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<u>세척·갱생</u>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③ ----- <u>세척·갱생·개량</u>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 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<u>세척·갱생</u>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,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	④ ----- <u>세척·갱생·개량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